

신·방 89.2. #218

언론사마다 윤리강령이 제정될 필요는 없는가

유 일 상/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제 바야흐로 언론은
타율 및 권력에 의한 법규
적·사회구조적 강압과 굴
종의 시대를 청산하고 공
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신장할 수 있는 도덕적 원
칙들을 언론 스스로가 자
신들에게 명령하고 이를
율법으로 지켜가야 할 시
점에 서 있다.

머리말

윤리는 인간 삶의 도덕적 차원이 갖는 다양한 성격과 그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응호해 줄 해답을 제시하는 지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윤리 역시 이러한 지혜들의 체계로서 언론인의 삶은 물론, 언론에 의해 사회변혁의 운동법칙들을 규정받고 있는 존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즉 언론윤리는 언론인과 언론 기관의 행동방식을 올바르게 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나아가 언론의 객관적 재생산물인 보도를 보다 가치있고 풍요롭게 만듬으로써 개인, 사회 각계각층 및 사회적 제판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윤리의 현실적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때 까지 우리들에게 친숙했던 도덕이나 관행이 과거처럼 가능을 발휘하지 않고 새로운 도덕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곧 우리나라의 언론계 현실처럼 언론 활

경변화가 급격한 곳에서는 과거 절대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기존의 윤리적 원리원칙이 실제상의 문제들을 지도할 수 없게 되므로 자연 언론윤리규정 전반에 걸친 수정을 필연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6월 민주화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자기중심 영역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져 있음을 실감나게 해주는 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도덕적 결심을 한다거나 선의지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사회구조적 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증거해 준다.

이러한 변혁 속에서 우리는 언론윤리규정도 그것이 개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이고 개인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면 필경 사회적으로 그 윤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고 윤리규정이 목표하는 도덕 규율을 완수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언론윤리규정의 개정 또는 그 현실적 지침의 마련에 관심을 갖고 언론인과 언론기관에 부여될 특수한 도덕적 의무를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언론윤리체계의 특성

윤리는 본래 사회적이어야 한다. 인간들의 도덕생활이 사회적 관련을 떠날 수 없는 만큼 개체의 도덕기준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가치의 구현에 가담하도록 동원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윤리는 무릇 사회윤리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언론활동에 관한 윤리체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옳은 언론행위와 그린 언론행위 사이에는 중요하고 진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둘째 언론인과 언론기관은 물론 특정의 윤리체계를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언론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알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정당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세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그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현행 윤리규정이 위와 같은 전제를 만족시켰을 때 비로소 언론윤리규정은 윤리체계로서의 사회적 성립요건을 가지지만 현실적인 작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념상 간결해야 함은 물론 논

현행 신문윤리강령은 도덕적 합당성은 있으나 현실적 작용성의 측면에서 흡이 많고 합리적 인간의 선택치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리적으로도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원리원칙들이 숙고된 도덕적 판단과 부합되어야 하며 세째 규정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만한 것이어야 하고 네째 언론현실에 적용가능한 원리원칙이며 동시에 실현가능하며 구체적인 현실상의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윤리의 제규정과 조항들중 그릇된 가정에 기초하거나 다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그들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러한 언론윤리체계는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사회생활을 지도하는 체계화된 지향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신문윤리체계의 현실적 작용성

한국의 언론윤리규정은 대체적으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의 그것은 매체별로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신문의 경우 신문윤리강령은 자유,

책임, 보도와 평론의 태도, 독립성, 타인의 명예와 자유, 품격을 선언하고 이에 기초하여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은 1957년 4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채택한 후 1961년 7월 30일 수정되었으며 1961년 8월에는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와 한국통신협회가, 1963년 3월에는 한국신문협회가, 1964년 8월에는 한국기자협회가 윤리강령 및 동 실천요강을 추가채택하고 이를 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강령과 실천요강들은 언론기관과 언론인 쌍방이 그들의 사회윤리로 수락한 규범내용들이다. 이 내용들을 공리주의적 입장과 도덕의무론적 입장으로 나누어 그 현실적 작용성을 평가해 보면.

첫째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언론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에 따라 의사결정을 행한 주체(언론인이나 언론기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고려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신문윤리강령의 모든 선언들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신문의 사회적 사명의 궁극적 목표를 통일민족국가에 두고 신문에 대한 민중의 요망에 부응할 것을 맹세

하면서도(신문윤리강령 전문), 이 강령 채택 이후에도 신문은 독재정권에 협력하여 민족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민중보다는 외세의존적 지배집단을 위해 일해 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윤리강령에 의거, 한국신문계가 자율적인 언론통제기구로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1961년 9월 12일이었다. 이 기구의 발족을 앞당긴 것은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박정희 장군의 언론철학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군사정권의 언론탄압을 우회적으로 이완시켜 보려는 신문계의 노력은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언론계의 역량이 결집한 결과, 1964년에는 박정권이 신문윤리를 법제화하려고 시도한 신문윤리위원회법안의 시행을 저지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2년 박정희 정권은 7·4공동성명을 배경으로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력의 조직화 및 능률

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유신헌법을 채택하고 한국정치사상 가장 독재적인 대통령으로서 폭 압적 통치를 관철시키게 되자 한국언론계는 재빨리 박 정희 노선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1974년 12월 16일부터 1975년 7월 16일까지 계속된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태 및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언론인 대량해직이후 자유언론실천은 허구의 슬로건이 되고 말았다.

유신체제 출범 이후를 시발로 하여 이어진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신문윤리강령의 미사여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필연적으로 언론윤리 자체에 대한 언론인의 불신과 경멸을 야기시켰을 뿐이다. 또한 1979년 10·26 사태 이후 1980년 5월 17일까지 비상계엄하의 한국언론은 비상계엄의 합헌성 여부를 불문하고 집권에 혈안이 된 일부 정치군인과 심리전 요원의 수중에 처넣어 져 엄청난 질곡과 수난을 당하였으며, 언론윤리강령이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언론의 민중지향성은 폐품처럼 파기되고 언론기관과 언론인이 민중을 적대시하는 지배세력에 완전포섭되는 비극을 맞았다.

제 5공화국 출범이후 신문윤리강령에 대한 인식이나 신념의 획득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언론의 태고난 사회윤리와 도덕적 원칙들을 실천하려는 소수의 양심적인 기자들이 오히려 독직·부패·무능 기자들과 함께 윤리적 강제에 의한 불명예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부도덕한 권·언 유착을 통해 제 5공화국 치하 7년을 한결같이 반민주적, 반민족적, 반민중적 언론으로 동원하겠다는 지배연립측의 명확한 예고였던 셈이다. 그 후 군부실권자와 파시스트적인 민간이론가들에 의해 단행된 언론기관 통폐합은 혁명적 의사결정 과정자체가 제도적으로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의 자율성 원리를 부정하고 간섭주의적인 개입을 통해 당시 폐간되었던 특정언론기관들의 자율적 선택을 유린하였으므로 정당한 공리주의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즉 신문윤리규정은 이상의 논변을 통하여 윤리주체의 자율성과 간섭주의를 적절히 조화시켜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자의 응호를 받을 논리가 회박하다.

한편 신문윤리규정을 의무론적 입장에서 볼 때, 강령의 선언이 언론으로 하여금 특정의 도덕적 의무를 부담지우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존중하며 다소간의 사회적 이득에 달성된다 할지라도 개인의 인권 침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윤리강령은 신문의 윤리를 바로 잡고 신문인의 권위를 굳게 지키기 위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신문의 자유, 책임, 보도와 평론의 태도, 신문의 독립성, 타인의 명예와 자유, 신문의 품격 등에 대하여 특정의 도덕적 의무를 짐지우면서도 실천요강을 통해 개인의 능동적인 정신활동영역을 규제하는 획일적인 가치관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이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능동적 행위단위임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는 윤리상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어 현실적 작용성을 갖기 어렵다. 이 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인에게 도덕적 동기를 부여하는 포괄적인 개인윤리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사회구조의 내외부적인 압력이나 법규상의 현실적인 통제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어 도덕적 의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내지 전략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신문윤리강령은 도덕적 합당성은 있으나 현실적 작용성의 측면에서 흠흠이 많고, 합리적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치료로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한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이 민중의 알아야 할 권리에 부응하여 완전한 자유언론활동을 수행하려면 보도와 논평의 태도 역시 자유롭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도가 이미 특정언론기관이나 특정언론인의 선택의 결과임을 부인하고 보도의 가치가 출처와 내용에 의해 규정되는 것처럼 만들어 개인의 능동성과 선택동기를 무시 내지 경멸하고 있다.

둘째, “평론은 독립불기의 소신을 공정대담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특히 진실에서 고의로 이탈하려는 편파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언들은 규범문이 갖추어야 하는 언명(言明)이 진리치에 조응하지 못하는 큰 약점이 있는데 대하여 공정한 논평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흠이 있다. 결코 논평은 논리적 진술이어야지 소신일 수 없고, 설령 소신이라면 그것이 대담하게 표현될지언정 공정한 평론에 이르지 못한다. 또한 인식론적으로 볼 때에도 진실에서 고의로 이탈한 허위보도와 의견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편파보도는 개념의 차원을 달리하므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실천요강 중 ‘보도와 논평의 태도’ 규정도 도덕의 무론적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자율능력을 제약하고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한다. 최근 언론학의 연구성

제언

과와 사회적 윤리능력의 진전에 비추어 볼 때 보도와 평론의 엄격한 구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객관보도가 직업상의 전략으로 평가되기에 이른 현재 (Tuchmon의 "Making News", The Free Press, 1978 참조)로서는 언론의 더욱 막중한 공공적 임무가 공정보도에 담보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보도와 논평을 공정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독자를 설득하거나 독자에게 영합하는 정치적·상업적 동기보다 독자와의 진정한 교류를 통해 언론과 독자가 하나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의 보도와 논평은 사회정의의 제원칙에 입각하여 공공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겠다는 신문윤리 강령의 제2항을 준수함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보도와 논평을 구분하는 것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등한 것을 차등의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취급하려는 정의의 본질을 회피하게 할 우려가 있고 언론이나 독자 모두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를 위축시켜 적절한 도덕규칙이 될 수 없다.

방송윤리체계의 현실적 작용성

방송윤리규정은 전문총8장 83조와 부칙으로 구

성된 장황한 조문들을 갖추고 제정 공포되어 197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윤리규정은 1975년 1월 30일 일부규정의 개정을 거쳤고 그에 근거하여 방송윤리심의준칙이 1975년 4월 29일 방송윤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방송윤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의 공포로 인하여 새로 방송심의업무를 법적으로 떠맡게 된 방송심의위원회에 그 권한을 인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구 언론기본법의 골격을 계승한 현행 방송법상의 기구인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회의 방송감시 및 심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됐다. 자율적 심의 기능을 갖는 기구라기보다는 법적 강제성을 띤 기구가 되고 말았다. 이 위원회는 방송언론인의 윤리적 자율판단에 맡겨져야 할 보도 논평의 공정성, 자유민주주의 신장과 인권존중, 민족의 주체성 함양,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 아동 및 청소년의 선

도, 가정생활의 순결,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등을 관장하고 그에 위반되는 방송행위자를 처벌토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방송윤리는 방송권력의 정치적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사회 윤리의 영역에까지 법적 간섭을 끌어들임으로써 공리주의적 윤리설로나 의무론적 윤리설 그 어느 것으로도 정당화를 논증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 규범에 의한 인간생활의 규제가 인류의 복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개인적 자율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의식의 선진사회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송심의위원회의 방송윤리에 대한 개입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겸토를 거치면서 우리는 현행 방송심의제도가 도덕의 본질보다는 법의 권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방송윤리가 행위주체인

방송사 자체의 공공적 사명과 책임 위에 재정립되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작용성을 갖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언론윤리규정이 갖춰야 할 도덕적 목표

언론윤리규정은 언론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삶

의 규범과 가치전반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사회생활의 실천적 원리를 담고 있어야 언론실무에 적용 가능한 윤리체계가 될 수 있다. 언론윤리규정에 의해 사회적 행위를 규율받게 되는 언론기관이나 언론인들은 단순히 개인적·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기계적 균형을 이루면서 언론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개체의 독립성과 인격성을 박탈당한 집단적 연대성으로 언론계를 구성하고 있지도 않다. 언론계는 언론인 개인의 내적 가치충실과 개별 언론기관의 가치충실을 바탕으로 상호결합되어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계는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개별적, 집체적 연대성을 기초로 하여 보다 더 큰 사회구성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하는 동시에 보다 큰 사회구성체는 보다 작은 공동체나 언론인 개개인이 그 자체의 가치충실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없는 활동에 한해 이를 보충, 촉진해주어야 한다. 언론윤리 규정은 마땅히 이와 같은 원

리를 수용하여 가능한한 개인의 자율적 가치판단 영역 을 많이 남겨놓아야 하며, 사회적 도덕체계의 현실적 성립요건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혁 행 언론윤리규정은 언론인 개인이나 개별 언론인이 기 존의 체제와 구조 밑에서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정화 또는 도덕화함으로써 언론윤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정언명제(定言命題)를 제시하고 있으나 혁 행의 언론정책, 언론제도, 언론법규, 언론체제 속에서 행위주체가 부담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는 개선 혹은 폐기하여 보다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현안은 대체된 윤리규정속에 언론인의 직업 윤리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담는 동시에 언론기관의 기업윤리를 명시하여 언론인과 언론기관이 현대사회의 구조적 틀 속에서 정의로운 보도를 실천하게 하는데 해답을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추론을 기초로 우리는 언론윤리규정 체계를 수립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려고 한다.

첫째 도덕의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의 차이를 인정하여 언론윤리규정의 강령과 실천요강을 작성하여야 한다. 즉 도덕판단의 행위자인 언론기관과 언론인의 윤리적 목표에 대한 접근방식이 크게는 매체별로, 작게는 기관별로 각각 상이하므로 한국언론윤리의 선언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기관과 언론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 아울러 강령과 실천요강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이 따르고자 하는 윤리목표와 언론인이 지키고자 하는 윤리목표간을 조정하는 자율적 기구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도 명시하여야 한다. 공정보도위원회의 조직을 선두로 하여 언론기관의 소유자와 기자조직간에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이성적인 대화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공익평가위원회, 독자투고심사위원회, 정보보도청구위원회는 물론 광고윤리의 영리적 표현행위와 공동체윤리의 조정을 위한 광고제재적격판정위원회 같은 기구들을 두어 당해 언론기관의 도덕성을 자율적으로 점검 토록 한다면 천부의 언론자유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독자인 국민대중들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부단하게 변혁시켜 선진경제에 걸맞는 의식의 선진화를 이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론윤리규정은 그 조문들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윤리규정이 명령·허용·금지·방임하고 있는 행위가 언론기관과 언론인으로 하

여금 정당하다는 신념을 갖게 할 수 있고 그 신념이 직관에 의해 자명하게 판단되는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와 일치함으로써 상식적 인간이 불완전한 직관능력에서 생겨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언론윤리규정은 적어도 옳은 언론활동과 그린 언론활동을 구별하는 준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옳고 그름의 판단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것을 조정해 줄 상위원칙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의지가 발현되는 언론현장에서 사람들의 가장 바람직한 상호관계, 상태, 제도를 묘사해 줄 수 있는 원칙은 정의이므로 모든 언론윤리규정은 정의의 가시화를 위한 구체적 원칙들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세째 언론윤리규정들은 윤리의 인식가능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행위자의 실천지침들을 상호보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된 여러가지 원칙들이 행위자의 행위방식, 즉 언론기관 소유자의 공익정신과 언론인 개인의 보도태도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실천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윤리규범은 인식가능성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생활을 통한 실천가능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예컨대 물질적 기초를 언급하지 않은 윤리규범들은 사회의 기본적인 제세력의 이해를 조정하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도전이 짚었듯이 예절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후에야 논의될 수 있다。(倉實而知禮節；三峯集 卷八) 마치 매슬로의 욕구발전5단계설이 자아의 실현을 제5단계로 보아 높은 가치를 두고 있듯이 행복의 도덕이든 의무의 도덕이든 그것은 사회적 조건과 문화의 정도, 때로는 우연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언론윤리규정은 가장 고양된 인간행위의 원리를 추구하는 바 보편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준칙이어야 한다.

결론

6공화국 출범 이후 언론환경은 크게 변화하여 언론기관간의 자유경쟁이 활발해졌고 그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쏟아져나온 언론기관의 범람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적 조정의 필요성과 간섭주의적 언론윤리체계의 활성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 속에서 언론의 자세에 대한 심각한 배려와 숙고는 언론자유화 조치를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고 현단계 한국사회의 변혁운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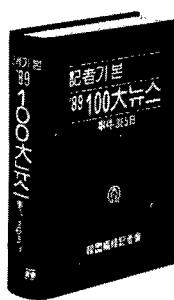
에서 필요로 하는 언론윤리의 재정립을 통해 오욕으로 점철된 제도언론이 다시 국민의 매체로, 평화의 메신저로 재생하는 길을 여는 새로운 각성과 결의의 필요 충분조건이 된다.

이제 바야흐로 언론은 정부당국의 홍보조정에 의한 타율 및 권력의 법규적, 사회구조적 강압과 정경유착에 의한 굴종의 시대를 청산하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신장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들을 언론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명령하고 이를 윤법으로 지켜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에게 영향을 미쳐온 정치권력이 그 자체의 도덕성을 회복했다면 그동안 제도언론이라고 냉대받았던 공식적 언론기구와 소속 기자들이 언론의 제자리를 찾아갈수 있도록 자치능력을 키워주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적 책임을 지고 보도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 일은 밖으로 볼 때 언론관계 윤리규정을 사회윤리의 원리와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는 일이며, 안으로 볼 때 개개의 언론기관이나 언론인 단체들이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우선은 윤리의 실천강령만이라도 스스로 제정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이다.

이 분위기에 힘입어 새로 제정될 각언론사나 언론기구별 윤리규정에는 법규적 통제와 사회구조적 제약속에서 각 언론기구와 그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언론기관의 소유자가

보장해주어야 할 편집권과 같은 근로자의 정신적 인격권 보장원칙, 언론기관이나 개별 언론인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안, 각언론기구가 수용하고 있는 공익의 판단절차와 공익개념의 내용 및 상위의 법규범이나 윤리규정을 해석하는 방법 등을 각 언론사의 사시, 가치목표, 도덕적 입장에 따라 분명하게 짚어주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언론기업은 상업적 원리와 공공적 원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여 각 기업의 독특한 모습을 소속 언론인과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며, 언론인 각자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판단과 그에 기초한 도덕적 선택이 초래하는 사회적 책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기구별 윤리규정의 제정은 각 기구별 양심선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여 언론이 제4부로서 맡고 있는 권력과 그에 따른 의무의 동반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들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타인이나 사회전체,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또는 형평을 잊고 상업적 원리에 매달렸을 때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과 비평 및 책임추궁에 대해 그것을 불평없이 받아들이는 윤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제5공화국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새언론——구시대에 협력하였던 언론기관과 언론인의 새출발을 포함하여——은 새로운 가치준거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



기자가 본 '89 100대 뉴스

한국편집기자회(회장 원종선)가 5년째 펴내는 '기자가 본 100대 뉴스—사건 365일'의 89년도판이 나왔다.

이책은 민주화의 욕구분출, 6공화국의 출범, 여소야대의 정치기류, 서울올림픽의 감동, 5공비리와 전두환씨의 은둔, 국회청문회의 열기, 북한 등 공산권과의 교류 등 '놀라운 88년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재조명했다.

특히 89년도판에는 최고·최대·최다의 기록을 남긴 서울올림픽을 예년과는 달리 컬러화보와 함께 150페이지 증면하여 수록했다.

(한국편집기자회간·736면·4×6배판·공급처 742-2168)